

공고번호 : 대전신용보증재단 제2026-02호

## 2026년 대전신용보증재단 2차 계약직원 공개경쟁시험 채용공고

대전신용보증재단은 「대전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으로 신용 사회를 선도할 계약직원(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1. 채용개요

채용구분	예정직무 <sup>주1</sup>	채용인원	근로기간 <sup>주2</sup>	비고
2026년 2차 계약직원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관리 (고객상담, 사무관리 등)	35명	임용일 ~ 2026년 4월 6일	공개경쟁

주1) 채용분야 예정직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붙임 2] 직무기술서 참고  
주2)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 종료일까지 근로계약 연장 가능

### 2. 근무조건

채용분야	근무조건
계약직원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근무지 : 대전신용보증재단 본점(대전 중구 중앙로 116)</li><li>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시간 : 9:00~18:00, 휴게시간(12:00~13:00) 포함) (필요시 초과근무 가능 및 수당 지급 (우리재단 규정 내 지급))</li><li>급여조건 : 252만원(세전)</li></ul>

### 3. 자격요건

구분	지원자격
거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아래 1번, 2번, 3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ol style="list-style-type: none"><li>2025년 7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li><li>2025년 7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li><li>공고일 이전까지 대전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함. 단, 대전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2의 참고))</li></ol></li></ul>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성별, 학력, 전공 등의 제한 없음(단, 수습임용일 기준 만 18세을 초과 하는 사람)</li><li>우리재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li></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26년 2월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li></ul>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 5.(월) 10:00부터 ~ 2026. 1. 12.(월) 14: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djsinbo\_recruit@sinbo.or.kr)

**5. 전형절차(평가기준) 및 일정**

전형내용	예정일자	평가기준 등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1. 19.(월) 10:00	○ (평가기준) 블라인드 미준수 및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비속어 사용, 의미없는 단어 반복, 지원기업명을 타사명으로 기재 등)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면접시험 응시 기회 부여
면접시험	'26. 1. 21.(수) 10:00~	○ (장 소) 대전신용보증재단 본점 회의실 또는 교육장 ○ (평가기준) 재단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기본자질(10%), 직무수행능력(40%), 직업기초능력(30%), 창의력 및 기타발전가능성(10%), 인재상 및 핵심가치(10%)
최종합격 후보자 발표	'26. 1. 23.(금) 10:00	○ (평가기준) 면접시험점수 100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시 면접위원 재심사로 합격자 결정
제출서류 접수	'26. 1. 23.(금) ~ '26. 1. 30.(금)	○ 최종합격 후보자에 한해 필수 서류 제출 - 이메일접수(djsinbo_recruit@sinbo.or.kr) ○ 2026. 1. 28.(수) 11시까지 서류 제출분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	'26. 2. 2.(월) 10:00	○ 결격사유 확인서 작성자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 등 검증결과 합격취소사유가 없는 자 ○ 응시자격(적격자) 확인 (거주지 및 공통사항) ○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취소 가능
입사 예정일	'26. 2. 4.(수)	-

- 최종합격 후보자에게 채용제한사유가 발생하거나 최종합격자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최종합격 예비후보자 예비순위를 부여하고, 2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에는 최종합격 예비후보자 순위별 채용
- 면접시험 응시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구)여권, 한국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소지 (미소지시 응시 불가)
  - \* 신분증 분실 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제출 가능
  - \* 모바일 신분증 불인정 및 (新)여권은 주민등록증 지참시 가능
- 전형별 합격자는 재단 홈페이지 내 채용 게시판을 통하여 게시

### 5. 제출서류 안내

단 계	제출서류
면접시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4] (면접당일 재단에서 직접 작성)</li> <li>○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필수제출)</li> <li>○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li> <li>○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대상자 등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li> </ul>
최종합격 후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증명서 1부. (필수제출)</li> <li>○ 직무관련 자격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li> <li>○ 경력증명서, 경험 증빙서류 등 1부. (해당자에 한함)</li> <li>○ 결격사유 확인서 1부. (작성 및 서명날인 후 제출)</li> </ul>

\* 제출서류는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사본 제출 불가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에는 불합격처리함

### 6.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 사진, 생년월일, 성별, 출신학교명, 학점, 출신지역, 가족관계 기재란 없음
- 이메일 기재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견될 경우 면접전형 단계에서 블라인드 처리됨

### 7. 가산점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시험 만점의 5~10%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적용비율을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채용 합격 예정인원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 할 수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대상자의 경우 면접시험 만점의 5% 가점 적용
- 단, 가산점 적용은 면접시험 시행일 당일 취업지원대상, 장애인 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적용
- 가산점 적용 요인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 적용함

## 8.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30일간 운영 예정
- 접수방법 : 재단홈페이지 “이의신청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응시자 본인이 이메일(djsinbo\_recruit@sinbo.or.kr)로 스캔본 송부 또는 재단 인사총무부에 원본 방문 제출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9. 채용서류의 반환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응시원서 및 채용서류 등은 일체 반환 불가함
- 최종합격 탈락 시, 제출하신 원본 서류들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 “반환 청구서 양식” [붙임 4] 다운로드 작성 후 응시자 본인이 이메일로 스캔본 송부(djsinbo\_recruit@sinbo.or.kr) 또는 재단 인사총무부에 원본 지참 방문. 채용서류 반환 신청 시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예정.
-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경과 시 불합격자 제출 서류 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처리함

## 10. 기타사항

- 채용절차 중도 포기 안내  
- 채용절차 진행시 다음단계 중도 포기의사가 있는 응시자는 재단 홈페이지 “중도 포기서 양식[붙임 4]” 다운로드 작성 후 응시자 본인이 이메일 제출(djsinbo\_recruit@sinbo.or.kr)
- 응시자 참고사항
  - 1)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시고 응시해야 합니다.
  - 2) 최종합격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3)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이후 응시자의 부적합한 결격사유 확인 시 또는 임용 이후 부정합격 확인 시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4)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재학·휴학·졸업 등의 응시자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임용 유예는 불가하고,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6) 채용 이후 인사규정에 따른 순환근무를 통해 재단의 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7) 채용 관련 인사 청탁과 관련된 응시자는 모든 채용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채용시 자격 5년간 제한, 관리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채용비리가 발견된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 바랍니다.

- 8)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문의처 : 대전신용보증재단 인사총무부 (☎ 042-380-3924)

2026. 1. 2.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